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양향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0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12.

발 의 자 : 양향자 · 임호선 · 이용호
이형석 · 김홍걸 · 한정애
조정훈 · 구자근 · 권은희
전주혜 · 최연숙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공사·공단”이라 함)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이 공사·공단의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, 공사·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사·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·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사·공단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공사·공단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려는 것임(안 제60조).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 제목 중 “임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임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임원”을 각각 “임직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공사·공단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0조의 개정규정(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<u>임원</u> 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<u>임원</u> 이 될 수 없다. 1. ~ 4. (생 략) 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<u>2년</u>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<u>임원</u> 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<u>임원</u> 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	제60조(<u>임직원</u> 의 결격사유) ① -- ----- ----- <u>임직원</u>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 ----- ② ----- <u>임직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<u>임직</u> <u>원</u> ----- -----.